

주요심결사례

2002. 4.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제주도관광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1평사2682)	<p>사단법인 제주도관광협회는 1997. 11. 9.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유람선 등 5개 업종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송객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각 분과별로 송객수수료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 10. 자신의 회의실에서 농원업분과위원장 등 9개 분과위원장단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내관광분야 분과위원장단회의를 통하여 관광상품 판매가격 및 송객수수료율을 조정·결의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협약서를 작성도록 한 후, 이를 같은 해 12. 24. 관련회원사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제주지역 관광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2001. 6. 29. 자신의 회의실에서 국내여행업분과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공항안내소를 이용한 여행객들에게 판매하는 비예약관광상품에 대해 부설관광 및 요금dumping을 예방한다는 사유로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15,000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반시 비예약순번 변경, 관광상품 홍보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이를 관련회원사들에게 통보하여 각 회원사가 취급하고 있는 비예약관광상품의 내용을 자신의 사무국으로 제출 후 판매도록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제주지역에서 발생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 × 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22,200천원

2002. 4.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칼라홈쇼핑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2002유거0319)	(주)칼라홈쇼핑은 2001. 11.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창업 8주년 기념 사은대잔치”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카달로그, 케이블TV(홈쇼핑) 및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광고를 보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인용품, 미용 상품, 운동용품 및 다이어트상품 등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일반소비자에게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였는데, 이들이 제공한 소비자경품류 중 300천원 이상, 500천원 이상을 구매하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제공한 “다이어트 마싸벨트”와 “피에르가르뎅 흠크저세트”의 소비자경품가액이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경품제공한도를 초과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2002. 4.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신세계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2001유거4739)	<p>(주)신세계는 백화점 매장의 상품군을 개편하면서 상품군의 개편에 따른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관행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고, 납품업자는 당해 비용이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괴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괴심인이 요구하는 당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마트 매장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위치의 소위 ‘엔캡매대’(매장의 통로쪽에 위치한 상품진열대)에 상품을 일정기간동안 진열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에 대해 엔캡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면 상품의 판매가 촉진된다는 이유로 2001.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동안 모두 222개 업체 12,751백만원의 매대사용료를 수수하였고,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전단광고를 통한 증정품제공 특별판매행사를 실시하면서 2001.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동안 82개 납품업체에 403백만원에 이르는 증정품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고,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에 대해 이마트의 매장내 벽면 등에 설치한 소위 ‘와이드칼라광고판’에 상품광고를 게재하도록 요청, 2001.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p>	<p>▶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리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납품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도록 함</p>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간동안 66개 납품업자에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140백만원에 이르는 광고료를 수수하는 등 자기의 구매력을 이용,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및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전에 당해 비용의 부담 조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롯데쇼핑(주) 및 (주)현대 백화점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1유거4740, 2001유거4741)	롯데쇼핑(주) 및 (주)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매장의 상품군을 개편하면서 납품업자의 납품상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개편에 따른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관행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납품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도록 함

2002. 4. 3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순천지역 5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광사0122)	현대자동차학원, 쌍용자동차학원, 순천대우자동차학원, (주)순천자동차학원, 순천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한 각 피심인들간의 학원 수강료 인하 경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체납하게 되는 등 학원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2001. 10. 27. 순천 뉴코아백화점 5층 중식당에서 관계자들간의 모임을 갖고 운전학원 수강료 중 도로주행 수강료를 2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장내 기능 수강료와는 별도로 징수 할 것을 합의하고 2001. 10. 29부터 이를 이행함으로써 순천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전라남도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5단 × 18.5cm의 크기로 1회 연명으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각각 고객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규격(78.8cm × 109cm)으로 별지 문안의 공표문을 작성하여 7일간(휴업일 제외) 부착함으로써 공표토록 함

2002. 5. 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3개 공인중개사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2전사0020)	대전고시학원 및 둔산고시학원은 이의범 등 31명이 자기 학원 출신의 합격자가 아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31명을 포함한 161명의 실명을 마치 자기학원 출신의 합격자인 것처럼 공동으로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대전, 둔산고시학원 출신 2001년도 시행 제12회 공인중개사 최종합격자명단”이란 제목으로 허위·과장광고 하였고, 한국고시학원은 김광수 등 85명이 자기학원 출신의 합격자가 아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2001년도 시행 제12회 자격시험 대전지역 최종합격자 535명 중 동 85명을 포함하여 자기학원출신 279명이 합격하였다고 허위·과장광고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전자규격으로 별지 문안의 공표문을 작성하여 수강생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부착함으로써 공표토록 함
(주)우리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2광고0221)	(주)우리홈쇼핑은 2002. 1. 15.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중국산 수입제기 판매방송 광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남원에서 제작했습니다” 또는 “직접 남원 현장에 가서 자료화면을 찍어 왔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남원의 제기 제조 공정 화면을 방영함으로써 마치 동 제품이 전북 남원에서 제작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주)CJ삼구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2광고0222)	(주)CJ삼구쇼핑은 2002년 1. 16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 중국산 수입제기 판매방송 광고를 하면서 동 제품의 원산지 또는 1차 가공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자막을 통해 “한국 동양아테크”라고 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동 상품을 국내산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	